

## 『청동천 개선복구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』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3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『청동천 개선복구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』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07. 09.

부여군수

### 1. 용역사업 집행계획

- 가. 용역명 : 청동천 개선복구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
- 나. 총사업비 : 금981,000,000원(금구억팔천일백만원)
- 다.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13개월간
- 라. 수요기관 : 부여군 건설과
- 마. 입찰예정시기 : 2026년 7월(부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  
※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함

### 2. PQ심사 신청자격, 평가서 제출, 평가방법

#### 가. 신청자격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)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.

-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(종합)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(설계·사업관리-일반)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(설계·사업관리-건설사업관리)로 등록한 자

## 나.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

- 1)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가능하며,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 이어야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%이상으로 구성,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.
- 2)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.
- 3)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,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합니다.
- 4)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, 2026.07.01.)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.
  - 지역업체 합산비율 30% 이상 : 3점
  - 지역업체 합산비율 30% 미만 20% 이상 : 1점
  - ※ 지역업체 단독으로 참여시 0점 처리합니다

## 다. 평가서 제출

- 1) 작성안내서 :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
  - 교부장소 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<http://www.g2b.go.kr>) 및 부여군 홈페이지(<http://www.buyeo.go.kr>)
  - 게시기간 : 2026. 07. 09.(목) ~ 2026. 07. 20.(월)
- 2) 제출일시 : 2026. 07. 20.(월) 09:00 ~ 17:00 까지 방문 제출
- 3) 제출장소 : 부여군 건설과 하천관리팀(041-830-2363)
- 4) 제출서류
  -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(원본 1, 사본 1)
  - 과업수행계획서(자기소개서포함) : 10부(2부는 평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각각 첨부하고 별책으로 2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, 6부는 업체명 미표기)
  - 이동식저장매체(USB)에 저장된 파일 1부
    - ※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, 업무중복도 공개자료 한글파일 첨부)
  - 사업자등록증 사본, 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, 공동수급협정서,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(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)
    - ※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부여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

## 5) 제출방법

-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대표자가 인감도장(사용인감),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,
-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재직증명서 등)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위임장 등)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. (※ 팩스, 우편접수, 퀵서비스 제출 불가)  
※ 부여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.  
※ 참여기술인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의 일반 공개 및 평가자료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PQ 평가자료 제출 시 전자파일(USB)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라.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

- 1)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8조 제1항 및 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-387호) 및 「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(충청남도 공고 2025-833호)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「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(88.65점)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.
- 2) 낙찰자 결정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 기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)」 제2장의2 기술·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- 3)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(2점)를 모두 부여하고,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, 해당 배점 한도(1점)을 모두 부여합니다.
- 4)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대표사 명의로 하여야 하며 부여군 건설과 하천관리팀 FAX(041-830-2379) 또는 담당자 이메일(2starbin@korea.kr)로만 접수(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는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

며,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)하고 회신은 회사의 FAX로 회신합니다.

※ 질의 접수일자 : 2026. 07. 13.(월요일), 09:00~18:00, 1일간

회신일자 : 2026. 07. 15.(수요일), (회사의 FAX로 회신)

- 5)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8조에 의거 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〔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-387호(2025.07.09.)〕 및 「부여군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에 따라 평가합니다.

### 3. 기타 및 유의사항

- 가.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부여군이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·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,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나. 자기소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한하여 작성 제출합니다.
- 다.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.
- 라.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자(이하 ‘참여기술자’라 한다)는 반드시 입찰 시 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, 입찰 전 퇴직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. 단,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여군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·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,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,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마. 부여군이 발주한 사업의 P.Q 및 가격입찰 등이 진행 중일 경우 타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자를 고의 또는 사위에 의한 방법으로 퇴직, 이직 등을 조장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.
- 바.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입찰 전 퇴직할 경우 해당 기술자는 향후 2년간(공고일 기준) 부여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참

여시 평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불이익(감점 3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사.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,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퇴직·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부여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아.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부여군 및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,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.
- 자.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(총점)하며,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부여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. 단, 평가항목 중 “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”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- 차. 평가자료 제출 시 참여회사 대표 명의의 용역참여 신청서에 “참여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황” 1부와 “자기평가서 총괄표” 를 첨부하여 평가서 및 공문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카.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부여군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, 위·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,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사정에 의거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- 타.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당해 사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부여군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, 추진계획이 변경 될 경우 부여군은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.
- 파. 본 용역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수, 용역기간 용역비는 공사기간, 공사의 연계성,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으며, 건설사업관리 착수 지연을 사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는 불가합니다.
- 하.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등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부여군 유권해석에 따르며,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(보완사항)

등은 부여군 홈페이지(입찰공고)에 게재 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  
시기 바라며, 추가사항(보완사항)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 
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건설과 하천관리팀(041-830-236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